

검 토 보 고

건 명	내 용
1. 현청사의 여건	○사하구 당리동 317-16번지 부지면적 : 4,773.8㎡ 건축연면적 : 5,126.17㎡ ○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(공용의 청사)로 결정되어 있지 않음. ○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준 주거지역으로 주변이 주거 건축물로 조성되어 부지 확장이 불가능 ○지방자치제 실시로 기구확대 및 인구증가로 행정 수요 급증 ○청사 사무실 부족으로 일부 부서 임시시설 이용
2. 신청사 이전 예정지	○사하구 신평동 산 26-3번지 면 적 : 29,973㎡(9,067평) 진입도로 : L=154m B=20m 개설 ○이전 예정지는 사하구 중심지역으로 해발 70~120m의 자연 녹지지역 ○이전지 서편에 B=15m 계획도로 (괴정~배고개~신평)가 개설되어 있고 이전지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30m 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신평, 장림공단과 주거지역을 연결토록 되어 있음. ○이전지 인접지에는 예비군 훈련장이 위치하고 4~6m의 현황 도로를 이용 진입하고 있음. ○도시계획에 편입되는 토지는 14필지 14명의 소유로 되어 있음
3. 도시계획공람공고	○신문공고 '93. 1. 5 부산일보 '93. 1. 6 국제신문 ○공고기간 : '93. 1. 5~'93. 1. 19 (14일간)

건명	내용
4. 검토사항	○공고내용 •공용청사 : 사하구 신평동 산 26의 3번지 일원 면적 29,973㎡ •도로 : 기점 사하구 신평동 19번지~종점 사하구 신평동 산 26의 1 규모-폭 20m 연장 154m ○접수된 의견 없음. ○도시계획 결정지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토지의 이용도가 좋으므로 지주들의 보상협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, ○협의 보상이 어려울 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까지 생각하여 완벽한 행정 절차를 해두어야 하며, ○도시계획공람공고, 도시계획입안권자가 구청장이냐 부산시장이나를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토론으로 결론을 지어야 하며, ○의안 제출의 내용을 보면 표지는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 및 공청회의 의견 청취로 되어 있고 내용은 동법 12조1항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로 의안이 제출되었습. ○도시계획 시설결정은 도시계획입안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 결정권자인 부산시장이 부산시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. 이점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이 있어야 하겠습.